

● 내부경영평가규정(0207)

제정 2005. 2. 22. 규정 제170호
 개정 2005. 5. 19. 규정 제175호
 개정 2007. 3. 28. 규정 제234호
 개정 2008. 1. 16. 규정 제271호
 개정 2009. 2. 23. 규정 제299호
 개정 2010. 8. 12. 규정 제362호
 개정 2012. 8. 23. 규정 제397호
 개정 2016. 3. 30. 규정 제483호
 개정 2019. 8. 21. 규정 제568호
 개정 2023. 9. 20. 규정 제6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내부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함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경영평가”라 함은 BSC 성과관리제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공사가 수립하는 경영목표와 사업 계획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하고, 평가 지표별 목표달성 정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2.8.23>
2. “지표관리부서”란 평가지표별 해당업무의 주무 부서로서 세부평가기준수립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12.8.23>
3. “공통지표”란 각 부서에 공히 적용되는 평가지표를 말한다. <개정 12.8.23>
4. “내부경영평가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이란 내부평가의 개요·운영·평가지표·세부평가기준 등 내부평가 실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12.8.23>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영평가의 중요

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05.5.19, 07.3.28, 08.1.16, 09.2.23, 12.8.23, 16.3.30, 23.9.20>

③ 위원장은 사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위원은 내·외부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위촉한다. <신설 16.3.30>

④ 간사는 담당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16.3.30, 개정 23.9.20>

⑥ 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6.3.30, 개정 19.8.21>

⑦ 위원회는 평가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단을 운영하거나 외부위원에게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평가단 운영방법 및 위임평가에 관한 사항은 편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12.8.23>

제5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평가업무의 중요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12.8.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2.8.23, 19.8.21>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다만, 위원장은 2호, 3호, 6호, 7호, 8호에 대하여 위원 중에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편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12.8.23, 16.3.30>

1. 내부평가 계획 및 운영(평가편람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16.3.30>
2. 성과목표 수립 및 지표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16.3.30>
3. 평가대상기간 중 성과목표 변경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 <신설 16.3.30>
5. 계량지표 목표 미달성 소명에 관한 사항
6. 위원장 및 성과관리 담당부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16.3.30>
7. 내부성과평가의 중요사항으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16.3.30>
8. 기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편람에서 정한 사항

제6조(평가주관부서) 직제규정에 따라 내부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2.8.23>

1. 내부평가 관련 제도 수립
2. 내부평가 관련 세부계획 수립
3. 편람 작성 및 배포
4. 내부평가 시스템 총괄 관리
5. 위원회 및 평가단 운영 지원
6. 내부평가 결과 분석·보고 및 사후 관리
7. 기타 내부경영평가와 관련되는 사항

② <삭제 12.8.23>

제6조의2(내부경영평가편람) ①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규정에서 위임한 내용과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람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고 사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한다.

[본조신설 12.8.23]

제7조 <삭제 12.8.23>

제8조(평가지표의 선정 및 평가원칙) ① 평가지표는 공사의 전략 및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중장기경영전략·경영목표·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편람이 정하는 시기에 각 부서별 평가 지표를 평가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8.23>

③ 해당연도의 평가지표, 지표별 가중치 및 평가산식 등에 관한 사항은 편람으로 정한다. <개정 12.8.23>

④ 공통지표에 대한 평가지표 선정 및 세부평가기준 수립은 지표관리부서와 평가주관부서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개정 12.8.23>

⑤ 평가는 공정한 태도와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일체의 정실과 온정주의적 태도를 배제하여 전직원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경쟁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2.8.23>

제9조(평가방법) ① 평가대상기간(중간평가 실시 포함)·평가방법·평가절차·평가대상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편람으로 정한다. <개정 12.8.23>

②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실적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를 답사할 수 있으며, 평가를 위한 제출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12.8.23>

③ <삭제 12.8.23>

④ <삭제 12.8.23>

제9조의2(이의신청) ① 평가결과는 평가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평가대상부서에 공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평가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계량지표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확인·검토한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2.8.23]

제9조의3(평가결과의 공개) 내부경영평가결과는 원칙적

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 범위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2.8.23>

제10조(평가결과 조치) ① 사장은 편람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및 연봉(대상자에 한함)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내부경영평가결과 반영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12.8.23>

② 내부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장의 방침을 받아 따로 정한다.

③ 내부경영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평가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8.23>

④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2.8.23>

부 칙<05. 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5.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3.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8.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8.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3. 30>

이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8. 21>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9. 20>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4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차기 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